② 토양 개량제 지원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○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·석회)를 공급함 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, 지력을 유지·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

2. 근거법령

○ 농지법 제21조(토양의 개량·보전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(무농약 이상)을 12.0%로 확대(주지표)
- 2015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, 밭 토양의 산도를 pH6.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

성과지표	2014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신출	ᄎ 저 버니	
정 과 지 표	목표치	' 11	'12	'13.p	시기	측정방식	
•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 (ppm)	157	_	157	157	매년 2월	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 결과를 측정(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)	
• 밭토양의 토양 산도 (pH)	6.5	_	6.5	6.5	매년 2월	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 결과를 측정(농과원 흙토럄 토양검정결과 활용)	

* '09~'11년까지는 농과원 주요농경지 토양검정결과 평균치로 산출하였으나, '12년부터 시용필지에 대한 다음 년도 검정결과로 지표 변경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, 천톤)

구 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이후
합 계	111,346	112,160	111,802	91,384	91,384
국 고	77,823	78,512	78,262	63,969	63,969
지방비	33,523	33,648	33,540	27,415	27,415
물 량	823	831	826	698	698
제주도(국고)	(2,211)	(2,900)	(2,650)	(2,274)	(2,274)
제주도(지방비)	(948)	(1,243)	(1,135)	(975)	(975)
제주도(물량)	(23)	(31)	(26)	(23)	(23)

*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'07~'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, '10년부터는 광역·지역 발전특별회계(제주특별자치도계정)에서 지원

Ⅱ.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
 - *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

2. 지워자격 및 요건

-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(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)로서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 - 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,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

3. 지원대상

- 규산 및 석회질비료
 - 규산 :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
 - 석회: 산도(pH) 6.5미만의 산성 밭(과수원 등 포함)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
 - *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(패화석 포함)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·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
- 지역농협 또는 시비(施肥)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)

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- 지원형태 : 지자체 경상보조
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·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,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
- 농가별 공급량은 시·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·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
- ※ 토양검정 대상은 토양개량제 살포한 농경지이며 검정시기는 살포한 다음년도에 실시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신청단계

농업 인

- 농업인은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(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 할 수 있음).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에는 지체없이 관할 읍·면·동에 제출하여야 함.
 - *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

2. 사업자 선정단계

농협중앙회(지역조합)

- 농협중앙회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(전년도 11월)
 -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·도별 공급물량 확정
 - * 석회 구매업체 조건 :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 (입상)는 우수단체 표준제품(입상)을 우선 구매·공급
 - * 패화석은 GR인증제품(입상) 또는 우수단체 표준인증제품(입상)을 우선 구매·공급

3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농협중앙회(지역조합)

-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
 -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(비종별),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
 -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(비종별)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
- 지역농협장은 지역별(읍·면·동, 리별, 마을별 등) 공급계획량을 시·군농정지원단 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
 - 공급단위 : 포대(20kg), 톤백(500~1,000kg)
 - * 톤백 공급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
-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,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, 이장 으로부터 토양개량제공급확인서(농협중앙회장이 마련)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
 - 세부 착지별 200포(20kg기준)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, 200포

-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(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)
- *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. 단,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
-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,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「인수 및 살포 집계표[별지 제2호 서식]」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
 -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,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

4. 자금배정단계

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·군·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·군농정지원단과 협의 하여 토양개량제를 읍·면·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농협 중앙회 시·군농정지원단에 대금 지급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, 인수 및 살포 집계표(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) 제출토록 함
 -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
 - 시·군·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,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

<토양개량제 살포>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농업기술센터 포함) 및 농협중앙회 시·군 농정지원단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,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
-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, 농협·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하며, 지자체 와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함.
 -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,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
 - 특히,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

- *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
-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의무 부여

농협중앙회(지역조합)

○ 농협중앙회 시·군농정지원단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[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, 인수 및 살포 집계표(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)]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

5. 이행점검단계

《제재》

시·도(시·군·구)

○ 토앙개랑제 미살포 및 방치한 농가는 다음주기(3년 주기) 공급대상자에서 제외

《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》

가, 품질검사

○ 검사기관 : 농촌진흥청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

○ 대상업체 :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

○ 검사내용 :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

○ 검사시기 : 업체별 연 1회(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) 이상. 단, 민원 발생

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

- 시료채취 및 송부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(농진청고시)'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·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(이하"시험연구기관"이라 한다)에 검사 의뢰
-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
- 검사성적 통보
-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

-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
- *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·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
-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
-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·회수하고,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

나. 유통단속 검사

- 농촌진흥청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
-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
- 농촌진흥청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,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

다.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

-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[별표1]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,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

6. 성과측정단계

-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년도 시용필지에 대하여 토양검정결과(익년 2월까지 조사)로 하며,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, 석회 (패화석)의 경우 산성도로 측정
 - * '14년도는 '13년도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시·군·구별로 3%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토양검정결과를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'흙토람 시스템'에 입력. 단, '13년 시용필지는 가급적 '12년에 '13년 살포예정 필지로 채취한 필지에서 채취토록 함.
 - * 또한, '15년도 시용예정 필지에 대하여도 시·군·구별로 3%를 토양검정함 으로써 '14년 이후에는 살포예정 필지와 살포필지와의 시용전후 토양개량

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.

- 농협중앙회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
 - 농가,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

7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《사업평가》

○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, 전년도 석회(패화석)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

《화 류》

○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문제점,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

Ⅳ.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- 1.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
 - 20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
 - '13.1~4월 중 '14~'16년 사업신청 접수(3년 1주기)를 받은바 있으며, 추가 신청에 대하여는 읍·면·동(시·군)별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 정보시스템(Agrix) 마감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

2.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○ 20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

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(토양개량제)

위 반 사 항	사업참여 제한기준	비고
1.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	- 1회 : 1년	
	- 2회 : 2년	
2. 유해성분량 기준초과		
- 1% 이상 10% 미만	- 1년	
- 10% 이상 20% 미만	- 2년	
- 20% 이상	- 3년	
3-1.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(중량 포함) 기준미달		
- 1% 이상 10% 미만	- 6개월	
- 10% 이상 30% 미만	- 1년	
- 30% 이상	- 2년	
3-2 그 밖의 규격(분말도, 붕괴도, 염분, 입도 등) 기준미달		
- 1% 이상 10% 미만	- 6개월	
- 10% 이상 30% 미만	- 1년	
- 30% 이상	- 2년	
4.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 한 비료를 공급한 때	- 2년	비료관리법시
		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
5.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 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	- 2년	"
6.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	- 1년	"
7.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	- 1년	
8.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	- 1년	
9. 무포장(벌크 형태 등)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	- 2년	
10. 보증표시 위반 가. 보증표시를 하였으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·양도·진열·판매·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) 생산년월일 2) 사용상·보관상 주의사항 3)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	-6개월	
나.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,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·양 도·진열·판매·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) 등록번호 2)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) 실중량 또는 실용량 4) 보증성분량 5) 원료명 및 배합비율 6)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7)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	- 1년	

위 반 사 항	사업참여 제한기준	비고
11.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	-1년	
-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		

- ※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됨(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)
- ※ 2개 비종 이상의 비료(토양개량제)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 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
- ※ 위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을 적용함(영업정지 1월: 1년, 영업정지 2월: 2년, 영업정지 3월 이상: 3년
- ※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

[별지 제1호 서식]

○ 신청지역 : ○○시·군·구 ○○읍·면·동 ○○마을

규산질비료 공급 신청서											
주 소 시·군·구 읍·면·동 리·통 번지											
신청인	各	성 명			전화번호	자택 :	핸드	트폰 :			
	주민	등 록 번호				E-mail					
					신 경	형 농 지					
읍·면·	읍·면·동 리·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재배예정 월별공급 (m²) (m²) 작물,과수 희망시기										
성환·	읍	신방리	믜	122	답	10,085	10,085	논벼	2월		
상기	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
20 년 월 일											
신청자 : (날인)											
	<u>:</u>	읍·면·동	장	귀 하							

석회고토비료 공급 신청서											
	주 소 시・군					읍・단	읍·면·동		·통 변	<u></u> 보지	
신청인	Ą	성 명			전화번호	자택 :		핸드	돈 :		
	주민	등록번호			E-mail						
	신 청 농 지										
읍·면·동 리·통		리·통	<u>l</u>	지번	지목	지 적 (m²)		신청면적 (m²)	재배예정 작물,과수	월별공급 희망시기	
성환·	유	왕림리	긔	127	전	23,085		23,085	배	10월	
, L 7 I	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				1-1						
(광기	와 실	i이 도망	개당	제 승급시	권 사업들		1나. 월	일			
								=			
	신청자 : (날인)										

패화석비료 공급 신청서 읍·면·동 주 소 시·군·구 리·통 번지 전화번호 자택 : 신청인 성 명 핸드폰 : 구민등록번호 E-mail 신 청 농 지 지 적 신청면적 재배예정 월별공급 읍·면·동 리·통 지번 지목 작물,과수 희망시기 (m^2) (m^2) 성환읍 왕림리 127 전 23,085 23,085 배 10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

신청자 :

일

(날인)

읍·면·동장 귀하

읍·면·동장 귀하

토양개량제 인수 및 살포 집계표(읍·면·동단위)

○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: ○○읍·면·동

<규산질 비료>

성명①	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	신청면적 (m²)③	기준 소요량 (kg)④	신청량 (kg)⑤	확정량 (포)⑥	월별공급 희망시기 (월)⑦	농가 서명 ⑧	살포 확인⑨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서명 (포)	서명 (포)
소계	00리							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	
소계	00리							
합계	○○읍·면·동							

<석회질 비료>

성명①	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	신청면적 (m²)③	기준 소요량 (kg)④	신청량 (kg)⑤	확정량 (포)⑥	월별공급 희망시기 (월)⑦	농가 서명®	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서명 (포)	서명 (포)
소계	00리							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	
소계	00리							
합계	○○읍·면·동							

【작성 요령】

- ① 성명 : 농질 결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,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
-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: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
- ③ 신청면적 :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
- ④ 기준소요량 :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(10a당) 산정
- 5 신청량 : (③×④)÷1,000
- ⑥ 확정량 : 예산배정 시 시·군에서 확정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: 리 단위 확정(우기 7~8월 제외)
- ⑧ 농가서명 :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 물량 기재
- ⑨ 살포확인 : 읍·면·동장이 지역조합 또는 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 확인(서명 은 조합직원 또는 이장)